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23 호 2020. 3. 19.(목)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2호[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8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0호[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2호[울산광역시 북구 우외광교물 등의 관리와 우외광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9호[공인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1호[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포인트) 1점은 1천원의 맞춤형 복리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월할 계산”이란 해당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진출·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질병·가사휴직·노동조합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3. 직위 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4.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각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직원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직원 건강증진시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친절·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국외 시찰
4. 생일·결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보장보험 항목으로 구성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선택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제11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점수의 합에 의하고 1,900점을 그 한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1,200점을 기본적으로 부여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직계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 이 경우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100점을 추가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연도 중에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고,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③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과건·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비는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신청서를 대신하여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는 사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며, 운영자는 지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맞춤형 복지제도 정산용 신용카드사 계좌에 입금조치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토록 한다.

③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3장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혜택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소속공무원 중 직렬·직급별로 7명 이내
-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필요
-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하나로 통합·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 과 통합하고 기존 지침 폐지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제4조)
-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제5조)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제7조 ~ 제14조)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5조 ~ 16조)
- 후생복지사업 운영 위탁(제17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5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03. 17.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진출입로 포장 및 우수관로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신천동 762-9번지, 762-10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3㎡(우수관로 매설 1㎡)
  - 나. 기 간  
- 2017. 07. 19. ~ 2022.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에스앤\*\* 대표 손수\*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로 46번길 21, 1층(달동)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367호

## 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 시설물관리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 : 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2. 시행청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3. 행정예고 내용 : 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장소 안내

시설명 (주소)	위 치	설치장소 및 대수			비 고
		계	외부	내부	
계		4	0	4	24시간 촬영
노동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노동역사관 사무실	1	0	1	신설(1)
	노동역사관 서고	1	0	1	신설(1)
	노동역사관 기획전시실	1	0	1	신설(1)
	노동역사관 상설전시실	1	0	1	신설(1)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3. 19. ~ 4. 8.(20일간)

####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6층 경제일자리과
- 전 화 : 052) 241 - 7714
- F A X : 052) 241 - 770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의 건 서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대 표 자 (기관/단체일 경우)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노동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b>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b>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370호

##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안 제22조)
  -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31, 팩스번호 : 052-241-801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개정(안)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p> <p>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p> <p>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p>	<p>&lt;삭제&gt;</p>

**붙임 2****관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현행 법령**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삭제 <2016. 1. 6.>

⑥ 삭제 <2016. 1. 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

## □ 구(舊)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박광희 ☎ 241-80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371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북구 복구청장인	공인노후화로 재등록	2020. 3. 19.		
2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지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노후화로 재등록	2020. 3. 19.		
3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노후화로 재등록	2020. 3. 19.		
4	울산광역시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조직명칭 변경	2020. 3. 19.		

## 2.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영	비고
1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북구 북구청장인	공인노후화	2020. 3. 19.		
2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지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노후화	2020. 3. 19.		
3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노후화	2020. 3. 19.		
4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위원장인	조직명칭 변경	2020. 3. 19.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372호

## 「울산광역시 복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가.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52)241-7652 팩스번호 : 052)241-765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돌봄 아동의 연령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